칸서스 부산대 특별자산 투자신탁1호

제정 2007.03.21.
개정 2010.08.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등) ①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국립부산대학교(주무관청) 내 문화회관 개발 BTO 사업을 영위하는 민간투자법인(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채권(법시행령 제3조제3호의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주로 운용되며, 금전채권의 가치는 당해 금전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회수율에 연동하여 변동됨에 따라 수익자는 직접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이 투자신탁은 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서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신탁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3. 이 신탁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약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신탁약관의 효력발생) ①이 신탁약관은 자산운용회사가 제정하여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가 이 신탁약관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약관이 정한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의 업무)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

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해지대금 및 이익금등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③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수탁회사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신탁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 사이에 별도로 체결되는 약정에 의한다. 다만, 이 신탁약관과 위 약정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약관이 우선한다.

제7조(자산운용회사 등의 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 400억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천억좌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모집 후 설정하는 원본이 400억원에 미달 할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추가신탁) ①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90일간은 수익증권의 총좌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설정 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금의 납입) ①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8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수탁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수탁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11조(신탁계약기간) ①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53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

지로 한다. (개정 2010.08.20)
②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36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권에 투자하여 운용한 투자신탁재산이 전액 상환되는 경우에는 전액상환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6개월간으로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2장 수익권 및 수익증권

제13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자산운용회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증권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5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 좌권, 10 좌권, 100 좌권, 1,000 좌권, 10,000 좌권, 100,000 좌권, 1,000,000 좌권의 7 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자산운용회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8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약관·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증권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증권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자산운용회사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18조의2 (수익증권의 상장 등) ①자산운용회사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②이 수익증권의 상장, 매매,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 19 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 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②제 1 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5,000 원으로 하여 5,000 원으로 공고한다.
④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1조(수익증권의 환매) ①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2.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이 파산, 법정관리, 화의신청 또는 해산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준하는 사유로서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환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⑤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⑥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10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시 제11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10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시 제11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환매대

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환매수수료) ① 제2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90일미만 : 환매금액의 5%

제24조(수익증권의 일부환매) ①제21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한다.

제25조(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8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9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투자증권등 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3.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④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⑤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⑥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한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 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⑤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익자총회

제28조(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②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이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①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자산운용회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30조(수익자총회의 운영) ①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증권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의결권 등)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익자총회의 연기) ①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전까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

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4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 · 신탁기간의 변경 기타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서 법령에 정한 사항에 관한 신탁약관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35조(준용규정) 수익자 총회와 관련하여 이 신탁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74조에 따른다.

제5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36조(투자대상 등)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 한다.

1. 법시행령 제 3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금전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
2.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 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 · 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 · 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2 조의 3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4.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7조(투자한도) ①자산운용회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 운용한다.

1. 금전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8조(운용 제한)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77 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제 2 조제 7 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 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금전채권에 투자한 투자자금의 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37 조제 1 항제 1 호, 이조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 월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금전채권 또는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은 이조 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 · 매각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 · 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 · 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②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자산의 취득·매각등의 거래를 한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한 이행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부담한다.

③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를 이행한 후 그 지시가 법령 · 규정 및 이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자산운용대상 및 방법 · 투자한도 · 자산운용제한 · 자산운용지시등 ·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의 철회 ·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6장 투자신탁의 보수 등

제40조(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는 자산운용회사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가 취득하는 수탁회사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 한다.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7.8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2

제41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금전채권 및 투자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금전채권 및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등 상장관련비용
7.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8.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9.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7장 투자신탁의 해지

제4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

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해지사유, 해지 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증권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이익분배) ①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성과(이하 분배금이라 한다)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한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다.
1. 지급기준일 :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의 익영업일
3. 분배금액: 자산운용회사가 지급키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44조(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수익자는 분배금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제44조의2 (중도상환금의 지급) ①자산운용회사는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운용한 투자신탁재산이 조기 회수(일부 상환 포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이하 “중도상환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상환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5조(상환금등의 지급) ①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자산운용회사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분배금·중도상환금·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분배금 또는 중도상환금·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분배금 또는 중도상환금·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수탁회사가 분배금 또는 중도상환금·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47 조(미지급금의 처리) ①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 105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투자신탁의 미지급금을 지급한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 중에서 그 금액이 확정된 경우 다른 투자신탁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8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49조(신탁약관의 변경) ①자산운용회사가 이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신탁약관의 내용이 표준신탁약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지체없이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이하 "이의신청기간"이라 한다) 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수익자가 신탁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약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50조(투자신탁의 합병) ①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에 관하여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얻은 사항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06조 내지 제109조에 따른다.

제51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이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③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월마다 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⑥ 수탁회사는 제4항의 수탁회사보고서를 판매회사에 제출하여 자산운용보고서와 함께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수익증권통장거래) 수익자는 자산운용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3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관할법원) ①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투자신탁은 2007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08.20)

제1조(시행일) 이 신탁약관은 2010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